

#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콘텐츠고도화) 사업 재공고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2025년 가상융합 과제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콘텐츠 고도화)」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06.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 1 사업 목적

- 지역 가상융합·AI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과의 상생을 유도하여 가상융합 산업의 저변 확산

## 2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 30.
- 지원대상 : 대구지역 소재 가상융합 혹은 AI기술 보유기업
- ※ 본사 소재지 대구(접수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완료 必)
- 지원분야 및 내용 : 기 개발된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
- ※ 상용화 및 사업화 가능한 수요기업 확보 필수(계약서, 수요처 협약서 등 수요처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원규모 : 총 40백만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하,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계상
  - 자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 <총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총사업비(100%)	지원금 (총사업비 80% 이내)	자부담금	
			현물	현금(최소 10%)
예시	50,000,000	40,000,000	9,000,000	1,000,000

※ 총 사업비 및 기업 현금·현물 부담금 산출 세부 내용

### 3 지원대상 및 자격

o 지원대상 : 대구지역 소재 가상융합 혹은 AI 기술 보유 기업

o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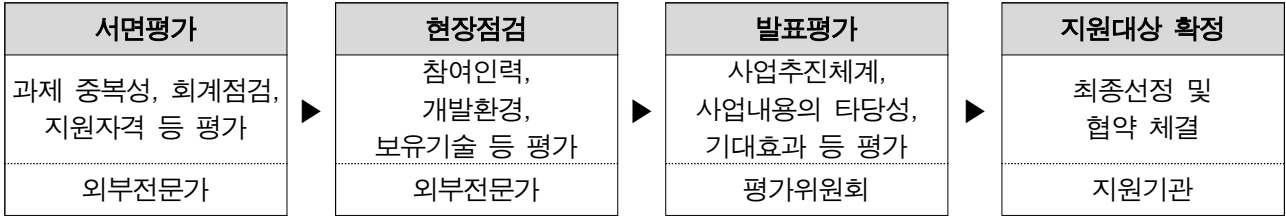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는 사업기간 내 고도화 완료 및 최종 평가 시 시연</li> <li>■ (위탁·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식)</li> <li>■ NIPA 인프라(상암, 판교),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 1회 이상 활용 권고</li> <li>■ DIP 주관 가상융합관련 행사 및 세미나 진행 시 참여 필수</li> <li>■ ICT 기금사업 관리 교육 참여(부패비리 및 사업비 오집행 예방 교육)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자가 진단표 제출 필수</li> </ul>
인력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인력 채용 의무(일용직 제외,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과제 참여 인건비 참여율이 계상된 자에 한함</li> <li>- 지원과제별 2명 이상 채용 필요</li> <li>-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 근거자료 제출 필수 (보수규칙,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필수)</li> <li>- 신규인력은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원칙</li> </ul> </li> <li>■ 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채용 시 진흥원 사업 담당자 통보 필수</li> <li>■ 사업계획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지원금 환수 등)를 취할 수 있음</li> </ul>
보험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기간 : 협약일 ~ 2026.1.31.(협약기간 + 60일)</li> <li>- 보험금액 : 총 지원금 100%</li> <li>- 제출시기 : 1차 지원금 신청시</li> </ul> </li> </ul>
성과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지원기관(DIP)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li> </ul>

o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업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이거나 선정이 확정된 기업 중복지원 불가 (컨소시엄 기업 포함)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업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 지원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 지원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
    -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상기 참여제한대상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관은 지원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음

## 4. 선정 절차 및 방법

### o 선정절차



### o 평가방법 및 기준

#### 1) 서면평가

- 평가자 : 지원사업 담당자, 외부전문가(회계사 등)
- 평가항목 :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회계점검 등
- 평가기준

	구분	검토내용	제출서류
공통 기준	과제 중복성	과제 중복성 여부	NTIS결과,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이력
		참여제한 여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NTIS 검토결과
		기타 규정 또는 공고내용 위반 여부	확약서 등
	회계점검	사전검토기준(붙임1)	재무제표 등
개별 기준	지원자격	o 지원사업별 자격기준 명시 - 지역소재 시, 가상융합 IT/SW기업, 문화콘텐츠 기업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붙임1 서면평가 사전검토기준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관기관(업), 참여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참여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li> <li>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업), 참여기관(업)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업의 부도</li> <li>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li> <li>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li> </ol> </li> <li>3. 기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기관장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원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li> <li>나. 지원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li> <li>다.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li> <li>라. 기업 채무로 소송 등의 기업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소송 중이거나 민형사 상 사건으로 인해 민원발생 중인 경우</li> </ol> </li> </ol>

2) 현장점검

- 점 검 자 : 지원사업 담당자, 외부전문가
- 점검항목 : 참여인력, 시설 및 개발환경, 보유기술 등
- 점검기준 : 점검결과 1개 이상 ‘부적합’ 판정일 경우 선정대상 제외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참여인력	- 제출서류 기준 참여인력 일치 여부	적합 / 부적합
시설 및 개발환경	- 제출서류 기준 기업 소재지 일치 및 사업영위 여부	적합 / 부적합
	- 제출서류 기준 개발환경(장비 및 SW 등) 일치 여부	적합 / 부적합
보유기술	- 제출서류 기준 보유기술 일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상기 항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평가

- 평 가 자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ICT/ABB 관련 전문가)
- 평가항목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자체 평가지표 등
- 평가기준 :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 ※ 산술평균은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 산술평균이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체계, 기대효과, 자체 성과지표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

< 발표평가 개요 >

- 평가일자 : 2025. 7. 25(금) 예정
- 평가장소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회의실
※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며, 참가업체별 20분 이내로 함 (사업계획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계획은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참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참여인력에 한하여 위임 가능(공문 및 위임장, 발표자 신분증 사전 제출)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공통지표			자체평가지표(MBO)		합계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공통성과지표	자율지표	
배점	30	40	10	10	10	100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공통 지표	사업추진 체계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기업의 추진의지 및 역량</li> <li>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li> <li>조직 및 운영체계 전문성</li> </ul>	10	30
			사업추진 수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기업의 전담인력 확보</li> <li>전담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li> <li>사업추진 인프라 확보</li> <li>주관기업의 재무건전성</li> </ul>	10	
			기업 성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 등 <b>(객관지표점수표 기준)</b></li> </ul>	10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획의 충실성</li> <li>사업목표의 적절성(사업비전 등)</li> <li>사업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li> <li>사업 목표수립 근거의 합리성</li> </ul>	10	40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li> <li>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li> <li>사업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li> <li>사업추진 일정 및 산출물의 타당성</li> </ul>	10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기술 보유여부</li> <li>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li> </ul> </li> <li>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 가능성 및 유사서비스와의 차별성</li> </ul> </li> <li>상용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li> <li>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시기 및 시장 진입 가능성</li> <li>산출물에 대한 수요처의 지속사용 가능성</li> </ul> </li> </ul>	15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계상의 적절성</li> <li>산출근거의 구체성</li> <li>(*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업)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li> <li>민간현금 확보 노력</li> </ul>	5	
	기대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산업 공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산업 활성화 노력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성과 향상도</li> <li>고용 창출 계획 적정성</li> <li>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산업 공헌도</li> </ul> </li> </ul>	10	10
자체평가지표 (MBO)		공통성과 지표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10	20	
		자율지표	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10		
합 계					100	

※ 상기 항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사업 추진 체계	(1-1)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주관기업의 사업이해도가 충분한가?</li> <li>② 제안기업의 비전, 비전에 따른 발전 로드맵(회사 운영 측면, 기술적 측면), 설립 이후 성장 경과, 향후 성장(발전) 가능성이 타당하고 높게 평가되는가?</li> <li>③ 해당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충분한 기술적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는가?</li> <li>④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li> </ul>
		사업추진 수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는가?</li> <li>②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인력의 역할 분담은 타당한가?</li> <li>③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 및 인프라가 확보되었는가?</li> <li>④ 수행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우수한가?</li> </ul>
		기업 성장가능성	① (정량) 최근 3년간 기업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 과제 수주실적 등 사업추진에 적정한가? <b>(객관지표점수표)</b>
2. 사업내용의 타당성	(2-1)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사업이 수행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가?</li> <li>② 사업목표 및 세부사업별/단계별 목표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li> <li>③ 사업비전, 사업목적, 사업목표, 세부사업별/단계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상호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li> </ul>
	(2-2) 사업내용	사업내용의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술개발전략, 사업관리계획, 평가계획, 성과 등 사업추진 전략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li> <li>② 해당 사업 기획과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 및 산업 동향분석을 수행하였는가?</li> <li>③ 기술수요조사 등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기획되었는가?</li> <li>④ 해당 사업 추진 일정은 적절히 배분되고 그에 따른 산출물의 결과가 타당한가?</li> </ul>
	(2-3)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사업 주관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기술 개발 측면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가?</li> <li>②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사업목적/지원대상/기술분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는가?</li> <li>③ 주관기업의 보유기술에 의한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li> <li>④ 해당사업으로 추진한 산출물이 사업기한 내 상용화 및 시장 진입이 가능한가?</li> <li>⑤ 수요처가 해당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가?</li> </ul>
	(2-4)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운용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li> <li>②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업)별 역할분담에 따른 사업비를 적절히 배분하였는가?</li> <li>③ 민간부담금(현금)을 해당 과제 필수 매칭비율 이상으로 확보 노력을 기울였는가?</li> </ul>

〈객관지표 및 우대사항(가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b>객관지표</b>	기업규모 및 신용정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증가 : 최근년도 재무제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확인 : 증빙가능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산출하되,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	증가 (2)	유지 (1)	감소 (0)
		○ 과제 제출일 기준, 직전년도 대비 근로자 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가입자명부(제출일자 기준)	100%초과 (2)	~90%이상 (1)	90%미만 (0)
		○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간) : 정부과제 수행(지원금 1억원 이상, 동일과제 내용 제외)	5건 이상 (2)	3건 이상 (1)	3건 미만 (0)
		○ 직전년도 수출 건수	2건 이상 (2)	1건 이상 (1)	1건 미만 (0)
		○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연구개발인력/총사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확인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서류 대체 가능)	30%이상 (2)	10%이상 ~30%미만 (1)	10%미만 (0)
우대사항(가점)	기술·품질 인증 등	○ 기술 및 품질 인증(참고2 SW인증기준 참고)	5건 이상 (2)	~3건이상 (1)	3건미만 (0)
		○ 지식재산권(최근 3년)	5건 이상 (2)	~3건이상 (1)	3건미만 (0)

**참고2 SW인증기준**

SW프로세스 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SP	SW프로세스 인증	3	CMMI	SW프로세스 인증
2	TMMi	SW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4	SPICE	SW프로세스 인증

SW제품 인증 및 기타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GS	SW제품 인증	15	EPC	성능인증제품마크
2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사이트 접근성 인증	16	모바일접근성	장애인접근성준수
3	ICT융합 품질인증	ICT융합 기술/제품인증	17	KTL마크	ISO25023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4	IOS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18	TTA마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증
5	장부보호 제품성능 평가	정보보호 제품성능 평가	19	A-SPICE	차량용 SW개발 프로세스 인증
6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20	EMV Level2	스마트카드 결제단말기 응용어플리케이션 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7	CC	보안적합성 인증	21	POS	POS단말기 보안기능 시험
8	ISO/IEC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22	GA	개방형 앱세서리 시험인증
9	ISO/IEC25000	SW품질 관련 국제표준 *KOLAS마크 포함	23	TL9000	정보통신품질경영
10	KC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	24	IMS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
11	CE인증	EU 통합규격인증마크	25	PMS	기업경영시스템 역량수준인증
12	FCC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26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13	NEP	신제품인증	27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
14	NET	신기술인증			

※ 기타인증은 IT관련 서비스인증(품질경영, 관리체계, 정보보호 등)으로 제한

## 5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2025. 06. 23(월) ~ 07. 0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기간) 2025. 6. 23(월) ~ 7.8(화)</li> <li>○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후 원본서류 제출</li> </ul>
선정평가	2025. 7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평가) 2025. 7월 둘째 주</li> <li>○ (현장점검) 2025. 7. 17(목)~18(금) 예정</li> <li>○ (발표평가) 2025. 7. 25(금) 예정</li> </ul>
결과발표 및 협약 체결	2025. 7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업 결과 안내 및 협약 체결</li> <li>○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70%) 지급</li> </ul>
사업수행	2025. 8. ~ 202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li> <li>○ 협약기간 : 2025. 8. 1. ~ 2025. 10. 30.</li> </ul>
중간평가	2025. 9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수행 중간평가</li> <li>○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지급</li> </ul>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25. 1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수행 최종평가</li> <li>○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li> </ul>

※ 상기 추진 일정 및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 한하여 개별 공지 예정

## 6

## 접수 및 문의

- 공고기간 : 2025. 6. 23.(월) ~ 2025. 7. 8.(화) 16:00까지
- 신청기간 : 2025. 7. 7.(월) ~ 2025. 7. 8.(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 후 원본서류 제출(방문/우편)
- 문의처 및 접수처
  - 제출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601호
  - 담당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BB기반팀. 053-422-9082/simall118@dip.or.kr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e-mail 접수 및 원본서류 제출 必)

※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담당자를 통한 접수번호 미발급 시 미접수 처리되니 접수번호 발급 확인 필수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추가, 보완, 반환 불가

###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 주관기업이 취합하여 HMP, PDF 두가지 양식으로 제출
2	첨부 1 ~ 8	- 사업안내서 참조 -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참여기업 양식은 미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관/참여기업별 PDF파일로 제출(국세청홈텍스 발급)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기업만 제출
5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주관/참여기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작년('24년)기준 명부 및 현재명부
6	'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인건비 산출내역 확인	- 주관/참여기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참여인력만 선별하여 제출 가능)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주관/참여기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22년~24년 재무제표 제출(국세청발급, 회계사공증서류만 인정)
8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주관/참여기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9	선택제출서류	<객관지표 및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 - 직전년도 수출 건수 및 증빙서류 - 직전년도 연구개발 인력비율(연구개발인력/종사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구개발인력현황표 등 - 기술 및 품질인증 혹은지식재산권 - 수요처 확보 증빙서류 - 기타 사업화 추진 실적 증빙서류 - 용역비 산출 서류(견적서 등) -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등의 참고자료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 관련 규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2025.4.23.)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2024.7.2.)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4.9.7.)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2022. 1. 14)
- ※ 부속지침 사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2023.11.30),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4. 10. 24)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 기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 지침 및 기준 등

## ○ 일반사항

- 동일한 내용으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업(정부 및 공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 사업비 관리

- 수행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별도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업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민간부담금 우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업이 정한 위탁정산기업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후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 금액 등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이자발생액 포함하여 전액 반납)